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상임이사 증원 및 상임감사 전환 >
■ 박해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368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 문 위 원 한 석 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상임이사 증원 및 상임감사 전환	2

I. 제안경위

2025년 11월 18일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임원 구성과 직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이사장을 포함 상임이사 3명과 비상임감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현재 2000년 대비 예산은 6.7배, 인력은 3.4배 증가하는 등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업무 규모가 크게 확대되어 왔음.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25년간 유지해 온 상임이사 정원을 확대하여 장애인 의무고용 강화, 중증장애인 직업지원, 기업 고용컨설팅, 보조공학 지원 등 다변화된 기능들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경영 체계를 확보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상임감사 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고용공단의 상임이사 1명 증원 및 비상임감사의 상임감사 전환을 통해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48조제2항).

Ⅲ. 검토의견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상임이사 증원 및 상임감사 전환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상임이사를 1명 증원하고 비상임감사를 상임감사로 전환하려는 것임.(안 제48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8조(임원의 임면) ① (생략)	제48조(임원의 임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u>3명</u> 은 상임으로한다.	② ----- <u>4명</u> 및 <u>감사</u> 는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의무고용제 운영, 부담금 관리, 고용장려금 지급,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등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책 수요 확대에 따라 예산과 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조직의 규모와 복잡성이 증대된 상황임.

[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현황

구분	2000년		2025년
예산	1,408억원		9,374억원
인력	430명	⇒	1,473명
조직	(본부) 2이사, 6실·국, 6부 (소속기관) 1고용개발원, 3직능원, 12지사		(본부) 2이사, 8실·국, 16부 (소속기관) 1고용개발원, 6직능원, 6지역본부, 17지사, 1보조공학센터

자료: 고용노동부

그런데, 이와 같은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상임이사 정원은 장기간 유지되어 왔고 감사는 비상임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 규모 확대에 비추어 경영 책임의 분담 및 상시적 내부 통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상임이사를 1명 증원하고 비상임감사를 상임감사로 전환함으로써 공단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상시적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로서,

최근 공단의 예산과 인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사업 영역이 다변화된 점을 고려할 때, 기능별 전문성을 갖춘 상임이사 체계를 통해 업무를 분담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신속성과 연속성을 제고하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또한, 감사를 상임화할 경우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에 상시적으로 관여할 수 있어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공단 대비 예산 또는 인력 규모가 유사하거나 더 작은 일부 공공기관에서도 4명 이상의 상임임원을 두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 개정안에 따른 임원 확대 방안은 기관 규모와 기능에 비추어 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표] 타 공공기관 상임위원 수

(단위: 명, 억원)

기관명	임직원 수	‘25년 예산	임원 수	
			상임임원	상임감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473	9,374	3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229	12,822	4	1
한국산업인력공단	1,878	11,232	4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939	5,869	4	1
한국에너지공단	758	20,307	6	1
한국장학재단	539	105,353	4	1

자료: 고용노동부

참고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기관 설립 시 상임이사 5명, 상임감사 1명으로 운영되었으나, 이후 정부의 행정지원 인력합리화 계획에 따라 2000년 법이 개정되면서 현재와 같이 상임이사 3명 및 비상임감사로 축소 운영해 왔음.

고용노동부는 공단의 조직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고, 수행하는 사업의 종류와 물량도 증가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 운영이 필요한 상황으로, 공단의 임원 증원에 이견이 없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39